

제 2 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제2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사례 11 2021대구조정24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뉴스통신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반론보도)

운영자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후원을 강요하고, 후원금 사용 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회원은 강제 탈퇴시키는 등 인터넷 맘카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반론보도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살림, 육아, 지역 관련 정보 등의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맘카페가 회원 규모가 커지고 지역 내 영향력을 가지자 운영자가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지역의 한 맘카페 운영자가 소상공인들에게 광고나 후원을 강요하여 개인통장으로 수익금이나 후원금을 받고, 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회원은 강제 탈퇴시키는 등 독선적인 카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신청이유

맘카페 운영자인 신청인은, 맘카페에 개업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카페 개설 후 진행한 후원 및 기부 등 활동 내역은 게시글로 알려왔고, 수익금의 상세 내역 공개를 요구하거나 이로 인해 강제로 탈퇴당한 회원이 없음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신청인에게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의 보도를 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쟁점 내용이 명백한 허위이거나 진실하다는 점을 밝히기 어려운 정황이고, 양 당사자의 의견차도 좁혀지지 않으므로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은 어려우나, 신청인의 반론이 같이 보도되어야 보도 내용에 대해 독자들이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심리에서는 반론보도 게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던 언론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그러나 안타깝게도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단체의 중심역할을 맡은 모 맘카페 운영자의 독선으로 공개 자료와 찬반토론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고자 한 거버넌스가 난항을 겪고 있다. 맘카페 운영에 있어서도 모금과 후원 그리고 광고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요구와 회원들 간 민주적 의견 개진에 대한 강퇴로 일관 독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 회원수가 2만 3천 명에 이르는 거대집단인 맘카페에 대한 문제제기에 어렵게 취재에 응한 지역소상공인(식당, 미용실, 커피숍 등)들은 맘카페의 위세에 눌려 개업 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광고(혹은 후원)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2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고 자발적인 광고나 협찬을 한 소상공인도 있을 것이다. 지금도 맘카페에 일주일 혹은 1개월의 홍보글을 올리는 데 맘카페 운영자 개인통장으로 2만 원에서 5만 원을 송금한다고 한다.

맘카페 게시판을 보면 이 같은 광고비가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광고 외에 여러 명목의 모금 혹은 협찬금 등이 운영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며 카페에 입금내역과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개를 요구한 회원은 강퇴시키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기자수첩] 맘카페의 명암 — 일그러진 두 얼굴> 관련

본문내용: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맘카페 운영자는 “맘카페 개설 이후 광고비, 기부 및 후원금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한 회원은 없으며, 회원을 강퇴시키거나 지역소상공인에게 광고 또는 후원을 하도록 강요한 일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기자수첩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선택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기자수첩면 기사목록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조정대상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한다.

사례 12 2021충북조정10/11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회사
피신청인 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반론보도)

시멘트 제조 시 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화합물을 두고 시멘트 제조 기업과 언론사가 해석을 달리한 사안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반론보도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클링커는 네 가지 화합물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신청인 기업이 생산하는 시멘트에 사용된 클링커에서는 한 가지 성분만 검출되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필수 성분이 전부 포함되지 않은 신청인 기업의 클링커는 폐기물에 해당하여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러한 클링커를 원료로 만든 신청인 회사 생산 시멘트는 불량품이라고 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클링커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화합물을 규정한 바 없음에도, 네 가지 필수 화합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신청인 기업의 클링커가 폐기물이라거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했다. 또한, 한국표준협회의 조사 결과 자사 시멘트 품질이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피신청인 언론사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신용을 잃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시험기관 등의 회신 내용과 관련해 신청인 기업과 다른 견해를 주장하며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사실관계 및 양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적정 수준의 반론보도가 상당해 보인다고 반론보도 게재를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 A 공장이 생산하는 클링커(시멘트 반제품)에서 4가지 필수 화합물이 포함 돼 있지 않다는 성분 분석 시험결과가 나와 시멘트 품질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클링커는 C3S, C2S, C3A, C4AF 등의 4가지 화합물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중략]**

시험결과서에 따르면 클링커 4가지 필수 화합물 중 C2S 성분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시멘트 품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후략]**

※ 다수의 조정대상보도 중 최초 보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A 주식회사 시멘트 품질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A 주식회사(이하 'A')가 생산한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에서 품질관리당국이 규정한 필수화합물 4종 중 일부만이 검출됐고, 해당 필수화합물이 클링커에 모두 포함되지 않은 이상 A의 클링커는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A가 폐기물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A의 시멘트는 불량품이라는 취지로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한 한국산업표준(KS L 5201)에는 클링커에 대하여 C3S, C2S, C3A, C4AF의 4가지 화합물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정의를 명시한 바 없고, ②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한 A △△공장의 클링커 및 시멘트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4대 원료 성분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시멘트 품질도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③ A의 클링커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도 아니고, ④ 결론적으로 A의 시멘트는 불량품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경제>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제>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표기하고 그 제목을 선택하면 보도문 본문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표시되도록 하며, 각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 게재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 최초 게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반론보도문 제목이 해당면 기사목록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해당 보도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3 2021서울조정631/632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국가기관
피신청인 유형	방송,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군 영상감시병의 임무 해태로 감시 장비에 포착된 귀순자 확인이 늦어졌다는 보도와 관련, 방송을 통해 반론을 보도하는 대신 인터넷 다시보기의 조정대상보도 영상에 반론보도문을 덧붙이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북한 남성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헤엄쳐 내려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는 등 귀순자의 동선이 중간 중간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되었음에도, 경계병이 줄고 있었던 관계로 신청인 부대는 상황을 빨리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 신청인 부대 영상감시병은 경보 알람을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알람창을 껐고, 정상 근무 중인 사실도 CCTV 녹화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감시병들이 자고 있었다고 단정하는 왜곡보도를 해 부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정정보도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반론보도는 방송 외 매체를 통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청인 부대는 방송을 통한 보도가 어렵다면 인터넷 다시보기 영상 말미에 자막으로 반론보도문을 삽입하고, 유튜브 영상에도 이를 동일하게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고, 피신청인 언론사가 신청인 부대의 요구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9년 전 노크귀순, 3개월 전 철책을 가볍게 월담한 귀순에 이어, 이번에는 오리발을 끼고 헤엄쳐 온 남성에게 육군 A사단이 또 뚫렸다는 사실이 어제 보도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남성이 우리 초소 CCTV에 처음 포착됐을 때 병사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중략]**

이 남성의 동선은 중간 중간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군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관찰하는 A사단 병사가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계 상으로 찍혀 있었는데 이게 넘어간 것도 모르고. 그땐 아마 감시병들이 잤든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동해안 북한 남성 귀순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지난 조정대상보도에서 남쪽으로 헤엄쳐 귀순한 북한 남성이 CCTV에 처음 포착됐을 때 육군 A 사단 병사들은 자고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A 사단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북한 남성 귀순(추정) 당시 영상감시병은 졸지 않고 임무를 수행 중 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 영상 말미에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표시하여 내보낸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 유튜브 채널에도 위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사례 14 2021서울조정890/891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국가기관
피신청인 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코로나19 백신을 조기에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는 백신 업체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거절하여 조기에 백신 물량을 확보할 기회를 놓쳤다는 보도와 관련, 객관적 진실 파악은 어려우나 신청인 측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정부가 백신 생산업체인 B 측과 3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추가 물량 계약을 논의할 당시, 업체 측으로부터 더 많은 백신을 구매하면 백신의 조기 공급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조기에 백신 물량을 확보할 기회를 놓쳤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기관은 최대한 많은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음에도,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하겠다는 업체의 제안을 신청인 기관이 거절하는 등 백신 확보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한 신청인 기관의 노력이 폄하되고,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취재원의 공개 없이는 업체의 백신 공급 관련 제안이 실재했는지 입증하기 어렵고, 신청인 기관의 반론이 보충될 필요는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권유했다.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반론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정부가 지난 2월 B 측과 3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추가 물량을 계약할 당시 “백신을 더 많이 사면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B 측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백신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물량을 더 구하지 않은 건 명백한 실책”이라고

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추가 계약이 논의될 당시 B 측은 “백신 물량을 더 많이 구매하면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300만 명분 구매 의사를 보였고 이에 따라 추가 계약 물량도 그만큼만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2월 추가 계약을 공식 발표하면서도 300만 명분만 확보한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알려드립니다]

본문내용: 본지의 조정대상보도와 관련, A 기관은 “B 측으로부터 ‘백신을 더 많이 사면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2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 부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며, 본문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사회섹션 기사목록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5 2021서울조정1236·1237·1238/1239·1240·1241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방송,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보도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반론보도를 게재하되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보도청구가 가능하도록 부제소 조항을 조정하여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세 살배기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멍을 보고 의사가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다른 아이들도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는 트라우마를 호소하자 부모들이 집단 고소를 결심했다며 학대 정황은 어린이집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청인은, 아동학대 관련 신고는 의사가 아닌 학부모 A 씨가 직접 한 것으로 의사가 학대를 의심하여 신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A 씨가 주장한 학대 날짜를 포함해 해당 아동의 입소부터 퇴소일까지의 모든 CCTV 영상을 학부모 등과 확인한 결과 학대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아동들이 스스로 머리를 때리는 영상도 어린이집 CCTV에 찍힌 영상이 아니라 학부모가 직접 찍은 영상임에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로 인해 이상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아동학대 의혹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당장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반론을 보도하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부제소 조항을 조정해 합의할 것을 권유하였고,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받은 신청인은 동일 보도에 대해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조정 심리 전 언론사가 추후보도를 방송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약속하여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분쟁이 종결됐다.

조정대상보도

○○ □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세 살배기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아이들이 비슷한 행동을 하는 트라우마를 호소하자 부모들은 집단 고소를 결심했는데, 어린이집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중략]**

세 살배기를 ○○ □구 한 어린이집에 보낸 A 씨는 얼마 전 아이의 몸에서 시퍼런 멍을 발견했습니다. 알려지일 것이라 생각해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는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A 씨 / 어린이집 아동 부모 〉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 기저귀를 갈 때 애기가 움직일까봐 꼭 잡는다고 잡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도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A 씨 외에 다른 부모 3명도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모두 3세반 부모들로, 이들은 CCTV에서 학대 정황을 봤다고 말합니다.

〈 B 씨 / 어린이집 아동 부모 〉 “선생님이 발로 차고,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이런 식으로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 ”

어린이집에 보낸 뒤 아이들에게서 이상행동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C 씨 / 어린이집 아동 부모 〉 “자기 머리를 때려요, 선생님 눈치를 보면서. 지금 4명의 아이가 똑같은 증상이에요.”

전문가는 이를 두고 불안에 의한 행동이라고 분석합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 □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 등에서 ○○ □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세 살배기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며, 어린이집 CCTV에서 학대 정황을 봤다는 등의 학부모들 인터뷰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은 “A 씨 자녀의 몸에 생긴 멍은 학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어린이집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동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아이들이 보이는 이상행동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증세로 보인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뉴스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 보도 다시보기 영상을 공급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동영상서비스(TV에 한함) 및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위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 보도 및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단, 추후 보도 청구는 제외)을 묻지 아니한다.

사례 16 2021서울조정1242·1243·1244/1245·1246·1247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회사
피신청인 유형	라디오,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유명 돈까스 가게의 원조 논란 보도와 관련,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보도 영상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조정대상보도를 한 라디오에서는 유튜브 다시보기에 반론보도가 게재된 사실만을 알리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유명 돈까스 가게의 원조 공방 논란을 다루면서, 건물주인 주식회사 A가 자신의 건물에서 돈까스 가게를 운영하던 임차인 B 씨를 쫓아낸 후 B 씨의 ○○돈까스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채 사업을 영위하여 원조 논란이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언론사는 해당 논란에서 주식회사 A가 임차인 B 씨를 가리켜 임차인이 아닌 위탁운영자라고 칭한 것은 거짓말이고, B 씨와 맺은 계약이 종료된 후 ○○돈까스를 상호에 넣어 주식회사 A를 설립하고 돈까스 음식점을 운영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회사는 여러 해 법적공방을 벌여온 B 씨가 유튜버와 공모하여 올린 영상에 대응하기 위해 공식 입장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B 씨를 위탁운영자라고 지칭하였는데, 이는 돈까스 음식점이 신청인 회사 가족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B 씨의 임차인 지위를 부인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돈까스는 일반 명사화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인 회사가 상호에 ○○돈까스를 사용한 것을 부정경쟁행위라 볼 수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신뢰도가 저하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한해 반론을 신는 방안을 제시하자, 신청인 회사는 매체 파급력을 고려하여 라디오 프로그램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포기하고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신청인 언론사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반론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C : 이분이 주장하기로는 B 씨가 단지 위탁 경영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내쫓았다라고 했는데....

D : 그렇게 반박을 했네요.

C : 판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D : 아, 그래요? 네.

C : 지금 이 나간 나가서 새로 식당을 차린 이분은 어... 임차인이었어요. 그 가게의 임차인.

[중략]

C : 공유자 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게 20XX년도거든요. 그 때 임대차 조건에 관해서 다툼이 생겨서 그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조건을 다르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영업을 못 하겠다고 영업을 중단한 거지 마치 위탁 경영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난 이런 게 아니에요.

D : 아, 위탁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

C : 아니다.

D : 점포 빌려서 거기서 그냥 본인들의 장사를 하고 있었다. [중략]

C : 그래서 거기 줄을 서서 먹게 되는 맛집으로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뭐 임대인이 건물주로서 나가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 상호를 그대로 쓰면서 ○○돈까스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뭐 이걸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중략]

C : 심지어 간판 색깔도 똑같고, 그 뭐 사실은 그 전에는 Since 19XX라고 쓰여 있을 정도로 그 전 영업자의 모든 것을 표지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두 이용했다면 이거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이거는 금지행위로...

D : 부정경쟁방지법이 있군요.

C : 네 그런데 이 법을 알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①

보도제목: [반론보도] ‘○○ 돈가스 원조 공방’ 관련

본문내용: 조정대상보도 관련해서, xxx번지 ○○돈가스 측에서 “xxx번지에 위치한 ‘○○돈가스’는 개업한 이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20XX년 임대인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돈가스 상호로 계속 영업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의 예로 제시된 해운대암소갈비 사건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반론보도문②(라디오 낭독)

‘○○돈가스 원조 공방’과 관련해서, xxx번지 ○○돈가스 측에서 반론을 전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방송 유튜브 채널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방법

-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영상하단에 반론보도문①을 통상의 방식으로 게재한다.
- 라디오 프로그램 해당 코너 시작부분에서 반론보도문①이 유튜브 다시보기에 게재되었음을 알리는 반론보도문②를 진행자가 낭독하는 것으로 한다.



사례 17 2021서울조정2114, 2021서울조정2115(병합) 각 반론청구

신청인 유형	국가기관
피신청인 유형	방송,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반론보도)

경계성 장애로 지적 능력이 낮은 여중생의 피해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가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반론보도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경계성 장애가 있는 여중생(A 양)이 고교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데, 지적 능력이 낮은 A 양이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성폭행으로 인정해야 할 사건을 성매매로 결론 낸 7년 전 ‘○○○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피해자 조사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 수사에 반영했고, 현장 CCTV 분석과 피해자 친구들의 진술 등을 혐의 유무 판단에 고려했음을 이유로 밝혔다. 조사 끝에 강간 등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으며, 「아동복지법」상 성학대 혐의는 인정되어 송치 결정을 한 것인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가 반론보도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중재부는 사안을 검토한 후 반론보도가 이뤄지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면 반론보도 게재를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당사자 모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여중생이 고교생들에게 집단 성폭행 당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사건은 7년 전 이른바 ‘○○○ 사건’과 똑 닮았습니다.

경계성 장애가 있는 여중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데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 못 한 사건입니다. **[중략]**

지난해 □월 ◇◇도 ◎◎에서 고등학생 3명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털어놓은 만 12살 A 양, 수사에 들어간 경찰이 내린 결론은 가해자들에게 ‘혐의가 없다’였습니다.

지적 능력이 낮은 A 양이 피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유로 동의한 성관계였다는 가해자들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중략]**

A 양 사건은 지난 20XX년 가출한 뒤 20 ~ 30대 남성 7명에게 성폭행 당했던 이른바 ‘○○○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만 13살 ○○○는 IQ 70 정도로, 경계성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경찰과 검찰은 피해 상황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성 매수 혐의만 적용했는데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경계성 장애아인데 가해자 말만 믿고”...‘○○○ 사건’과 판박이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위와 같은 제목의 조정대상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B 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제33조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 및 진술에 관한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수사에 반영하였고, 현장 CCTV 분석 및 피해자 측 친구들의 진술을 토대로 강간 등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아동복지법상 성학대 혐의는 인정되어 ‘송치 결정’한 바, 단지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②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공급한 네이버, 다음 등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8 2021부산조정81·82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공기업 사장에 응모한 신청인이 해당 공기업 임원 재직 당시 상급 기관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고, 노조의 경영본부장 재연임 찬반투표에서 불신임을 받아 퇴직하였다는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A교통공사 사장 선임에 응모한 전직 A교통공사 임원 B 씨에 대한 논란을 조명하면서, B 씨가 재직 중 안전행정부 공기업평가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었음에도 지자체는 이를 은폐하고 A교통공사에 징계 요구도 하지 않았고, B 씨는 핵심요직만 거쳐 오면서 인사를 장악해 노조원들의 반발을 샀으며, 경영본부장 재연임에 대한 노조의 압도적인 반대로 퇴직을 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노조의 재연임 찬반투표와 무관하게 공사 재직 중 임원의 임기가 끝나 퇴직한 것이고, 공사의 다른 임원에게 권고 사직서를 징구한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또한 공기업 평가를 담당하던 부서장으로서 회사와 구성원 전체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감사원이 사회상규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이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라 여러 보직을 경험한 것임에도 이를 부정적으로 보도하여 명예훼손은 물론, 사장 공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의 반론5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반론보도 수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신청인은 반론보도 게재와 함께 조정대상보도의 단정적인 표현도 수정해주기를 요청했다. 중재부는 반론보도 합의와 별도로 조정대상보도의 일부를 수정해줄 것을 피신청인 언론사에게 제안하였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A교통공사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밀실 심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응시자 중 공사 임원을 지낸 B 씨에 대해 재직시절 상급 기관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사실을 A사가 은폐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사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당사자에 대해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다 A시의회의 자료 요구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논란의 당사자인 B 씨는 지난해 A교통공사 노조의 경영본부장 재연임 찬반투표에서도 96% 이상의 반대로 불신임을 받아 퇴직한 바 있으며, 재직 시절 부구청장 출신인 공사 임원에 대해 권고 사직서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해까지 공사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쳐 왔으며, 지난 20XX년 인사업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안전본부장에 연임됐다가 공사 사상 유례가 없는 보직변경을 통해 부서를 이동하는 등 인사권에 관여하려는 움직임에 노조원들의 반발을 샀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A교통공사 사장 응시자 B 씨 관련 반론보도

본문내용: 본 인터넷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A교통공사 사장에 응시했던 전 경영본부장 B 씨가 안전행정부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해 감사에 적발되었으며, A교통공사 노조의 경영본부장 재연임 찬반투표에서 불신임을 받아 퇴직한 응시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의 당사자인 전 경영본부장 B 씨는 “당시 금품 제공 사건은 공사 업무 중에 생긴 일로써 사회상규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으며, 노조의 재연임 찬반투표와 관련 없이 임기 종료에 의하여 당연 퇴직한 것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공사 임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그럴 위치도 아니었다”며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정치사회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을 12시간 게재한다. 제목 및 본문 활자 크기는 통상의 크기로 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12시간 게재 후에는 반론보도문이 검색되도록 조치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조정대상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9 2021서울조정2833·2834·2835/2836·2837·2838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방송,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기초 지자체가 정화작업을 마치지 않은 슬러지를 타 광역 지자체 하수처리장으로 보냈다는 의혹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인터뷰 발언 중 일부만 발췌하여 방송한 것은 신청인의 발언 취지를 왜곡한 것일 수 있어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기초 지자체 A시와 A도시공사가 하수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정화작업을 마치지 않은 하수 찌꺼기를 광역 지자체 B시의 하수처리장으로 몰래 방류하였다고 환경시설 관련 노동조합의 주장을 빌려 보도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에 A도시공사 관계자인 신청인의 인터뷰 발언 중 '전체적으로 보아 비중이 미미하다면 오염을 시킨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발췌 삽입했다.

■ 신청이유

현직 A도시공사 팀장인 신청인은 하수처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 방문한 기자에게 한시적으로 하수를 방류했던 이유가 하수처리장 정상화 개선 공사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임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예시를 들어 비유적으로 설명한 인터뷰 부분을 피신청인 언론사가 전체 취지와 다르게 편집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A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하수를 B시로 방류하는 것처럼 전달되어 회사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최소한 반론보도는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된 인터뷰 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 측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A시가 정화작업을 마치지 않은 하수 찌꺼기가 섞인 물, 즉 슬러지를 B시 모르게 BOO 하수처리장으로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조 측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인데, A시는 일단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중략]** 노조 측은 슬러지 건조처리에 드는 약품 비용을 아끼려고 별인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체 처리할 슬러지를 OO처리장에 보내 B시에 처리 비용을 사실상 떠넘겼다는 겁니다.

B시 측은 “그런 배관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환경 전문가도 자체 정화 과정에 있는 오염 물질을 B로 보낸 이유에 의문을 드러냅니다.

[중략]

A도시공사 측은 배관 가동 사실은 인정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A도시공사 관계자(지난 ▲일)]

“강에 가서 내가 오줌을 똥어, 근데 이게 오염시킨 거냐 이거지. 전체적으로 보기에선 다 진짜 미미하기 때문에.”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A시, ‘하수 찌꺼기’ B로 몰래 방류」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A시가 20XX년부터 지난해까지 찌꺼기와 물이 섞인 슬러지를 B시 OO 하수처리장으로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A도시공사 측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반응했다며 관계자 인터뷰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도시공사 관계자는 “A 하수처리장의 분리막 시설 고장 등 비상상황에 따른 조치로 20XX년 9월부터 20YY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중간처리 단계에 있는 반송 하수를 B시 OO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한 것이고, 인터뷰 내용은 반송 하수가 OO 하수처리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취지로 예시를 든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 영상을 공급한 네이버 TV와 카카오 TV 및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위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사례 20 2021경기조정368·369·370/371·372·373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회사
피신청인 유형	방송,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A시가 특정 회사에 인허가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보도 관련, 반론보도를 우선 게재하고 언론사가 준비 중인 후속보도는 감사 결과가 나온 후 방송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A시가 주민들의 동의 없이 대형물류센터 건립 허가를 내주었는데, A시는 업체가 허가를 신청한 창고가 일반창고가 아닌 7층 규모의 물류센터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반창고 허가 신청을 묵인해주어 인허가 과정에 특혜가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언론사는 물류센터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통학 안전 확보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높고, 지역시민단체에서도 교통 대란과 사고를 우려하는 반대 집회를 이어가는 등 많은 주민들이 물류센터 착공에 거센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회사는 건축물이 창고인지 물류터미널인지를 구분하려면 건축물 전체의 주된 용도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건축하려는 시설의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창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창고시설임이 명백하고, 이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며, 신청인 회사의 허가 신청에 문제가 있었고 A시에서 이를 눈감아주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창고 인근에 학교나 주거단지가 직접 접해있지 않아 주민생활에 별다른 영향이 없음에도 해당 보도로 인해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사안을 검토한 후 현 시점에서는 반론보도가 타당해 보인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신청인 회사는 반론보도에 더하여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가보도를 내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신청인 언론사가 이를 수용하여 반론보도 게재와 함께 후속보도의 보도시점을 유예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A시가 주민 동의 없이 대형물류센터 인허가를 내주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 규모로 볼 때 단순 보관용 일반 창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시가 이를 묵인해줬다며 집단반발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중략]** 수도권 물류 수요 증가로 인한 물류 허브 역할을 위해서라는데, 문제는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업체가 일반창고로 허가를 신청했는데, A시가 7층 규모 대형물류센터임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아준 겁니다.

이에 대한 A시의 입장은 모호했습니다.

허가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면서도 일반창고와 물류센터의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중략]**

지역시민단체는 물류센터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통학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B / □□발전연합회 위원

- “사기업의 이윤 추구 외에 어떠한 사회적 가치도 없고 공익도 추구되지 않는 이 건축허가를 국가공무원이 내렸다는 거에 대해 화가 났었고, 사기업이 돈 버는 데 주민들과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행사 측은 일반창고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교통유발계수가 낮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알림보도] A □□ 물류센터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주식회사 C가 물류센터를 창고로 허가 신청한 것을 A시가 알면서도 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이 있고, 물류센터 인근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통학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C 측은 “해당 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창고 시설만 건축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C의 설계도서를 보면 해당 건물은 물류터미널이 아닌 창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A시 허가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 또한 사업지와 학교는 직선거리로 650m, 도로로 1.0km 이격 되어 있어 교통안전에도 영향이 없으며, 시행사는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앞 도로로 차량이 통행하지 않도록 확약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12시간 동안은 뉴스면 주요뉴스목록 상위 5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반론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12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반론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조정대상기사 본문 각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조정대상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 향후 신청인의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후속보도는 감사원의 A시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사례 21 2021서울조정2893/2894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회사(언론사)
피신청인 유형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신청인 언론사가 방송작가에게 계약 외 업무를 지시하고도 추가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고, 계약 관련 항의를 하자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보도와 관련, 피신청인 언론사가 반론을 인터넷 기사에 사후 반영하였으나 지면신문에도 반론보도를 추가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TV가 6년간 방송작가로 일했던 A 씨에게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지시하면서도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 관련 항의를 하자 일방적으로 A 씨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무사의 견해에 따르면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아울러 채용 당시부터 A 씨를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대하며 정규직 기사가 하는 업무를 맡기는 등 필요할 때는 직원처럼 일을 시키고, 불리할 때에만 프리랜서로 대했다고 지적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언론사는 보도에 언급된 A 씨는 주로 국내 기사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일을 담당한 프리랜서이지 방송작가가 아니고, 업무위탁계약서에 명시된 리포트 1개와 단신 기사 3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계약금액은 모두 정상 지급되었으므로, 계약서에 없는 일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A 씨는 취재 없이 PD가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직접 취재를 해야 하는 정규직 기자의 업무형태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기자들이 선배 호칭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음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제보자의 주장에만 치우친 보도를 하여 신청인 언론사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 이후 신청인 언론사의 주장을 인터넷 기사에 반영하였으므로 반론의무를 다하였다고 항변했다.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가 지면에도 실린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기사에만 반론을 반영한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지면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권고하였고, 양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TV 지휘 아래 매일 출퇴근하며 6년간 일한 ‘무늬만 프리랜서’ 작가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에 나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작가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사측의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뒤집고 회사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중략]**

A 씨는 20XX년 1월부터 만 6년 매일 아침 서울 □□구 ○○○TV에 출근했다. 그는 ○○○TV가 방송하는 10시 뉴스와 12시 뉴스 프로그램에 쓰일 기사를 작성했다. 개수와 내용, 형식은 ○○○TV 측 지시에 따라 날마다 달랐다. △△보도센터장과 PD가 지시할 때마다 영어 자막, 정규직 기자가 쓴 리포트 녹음, 기자 자막 교육 등 업무를 수행했다. 모두 계약서엔 없던 일이다. 회사가 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업무이기도 하다.

○○○TV 측은 채용할 때부터 그를 ‘직원’으로 대했다. ○○○TV는 작가 모집 “전형 일정”으로 서류와 필기시험, 1차면접과 최종면접을 실시했다. **[중략]**

A 씨 이후 입사한 기자들은 그를 ‘선배’라 불렀다. 그도 먼저 일한 ○○○TV 직원들을 ‘선배’라 했다. 정규직 기자와 업무가 뒤섞이기도 했다. 데스크가 A 씨가 쓴 기사를 보고 ‘이건 추가 취재를 해봐야겠다’며 기자에게 넘기는 식이다.

계약에 없는 추가 업무도 일상이었다. 담당 PD가 지시하면 주말용 기사를 추가로 작성했다. 오후 5시에 쓸 기사도 수시로 지시 받았다. 수당은 없었다. **[중략]**

A 씨에 따르면 PD는 그해 계약 기간이 끝나가던 지난해 1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씨는 지난 ◇월 ◇일부로 ○○○TV와 계약이 해지됐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6년 출근 ○○○TV 작가 “필요할 땐 직원, 불리할 땐 프리랜서”> 관련

본문내용: 본보는 조정대상보도에서 ○○○TV가 프리랜서 작가에게 정규직 기자가 하는 업무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업무를 급여 지급 없이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TV 측은 “해당 작가는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한 바 없으며,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대금을 지급하였고, 해당 작가가 먼저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2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며, 본문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